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 운영 조례 안

의 번 호	613
-------------	-----

제출년월일 : '97. 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사유

-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
- 유도구역상인들의 생계대책 및 주변환경정화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인의 자격 (안 제5조)

- ①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최초 입주한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대상자중 타업종으로 전업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보훈대상자
 - 2. 생활보호대상자
 - 3. 장애인
 - 4.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자

○ 사용허가 (안 제6조)

시설사용 및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는 1년단위로 갱신

○ 양도등의 금지 (안 제8조)

사용권 양도, 전대 금지

○ 운영 (안 제21조)

시민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市場)(이하 "시민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민시장은 안산시 초지동 604-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이조례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제4조(휴무일 및 개장시간) ①시민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 한다

1. 신정(2일간), 설날(3일간), 추석(3일간).
2. 기타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 ② 시민시장의 개장은 06:00 - 22:00까지로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민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인의 자격) ①시민시장의 사용인은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평"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최초 입주한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중 타업종으로 전업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 | | |
|----------|----------------|
| 1. 보훈대상자 | 2. 생활보호대상자 |
| 3. 장애인 | 4. 기타 시장이 추천한자 |

제 2 장 사 용 허 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해지) ① 사용인은 허가기간중 시설사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영업기시를 하지 않거나 2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양도동의 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 준수사항) 사용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기타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5.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제 3 장 사용료등

제12조(사용료 산출) 시민시장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안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증금 산출) 사용인이 남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당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상당 사용료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 사용인은 사용허가시 화재보험료에 대한 분담금을 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남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용료등의 반환) 남부한 사용료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인한 사용해지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시설관리

제18조(시설변경의 금지) ① 사용인은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인이 허가없이 시설물을 변경하였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사용인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반환) 사용인은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불법시설철거등) ①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위탁관리

제21조(운영) ① 시민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사용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4. 주변환경 개선
5. 사용인의 자질향상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교육
6. 기타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징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징수 부담금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② 위탁징수계약기간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상품등의 철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에 대한 권고) ①시장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제22조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

- 1.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2.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할 때
- 3.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6 장 보 칙

제27조(청결유지) ①사용인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 및 사용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평령)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집행상황등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시장의 전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동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다른조례의 준용) 이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